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93
----------	-----

2022. 3. 2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3월 2일

나. 발 의 자 : 송미애 의원 등 7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3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3월 16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미애 의원)

가. 제안이유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명시(안 제5조)
-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학교·연구소·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가. 제출배경

- 우리나라 식품을 대표하는 김치산업은 지역농산물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후방 연쇄효과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제공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의 김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국내 김치 산업 규모('19년)

□ '19년 김치 총 공급량은 1,907천톤, 총 수요량은 1,897천톤(10천톤 감모)

○ 총 공급량 1,907천톤은 외식·학교급식 및 가구 자가제조김치 1,115천톤(58.5%), 상품김치 792천톤(41.5%)으로 구성

○ 총 수요량은 1,897천톤은 외식·학교급식 수요 800천톤(42.2%), 가구 수요 1,067천톤(56.2%), 수출 30천톤(1.6%)으로 구성

- 국내유통 상품김치는 752천톤(국산 446천톤·59.3%, 수입산 306천톤·40.7%)

< '19년 국내 김치산업 규모 >

(단위: 천톤, %)

공급/수요	국산				수입산	총공급	국내유통
	가정제조 (a)	외·급식업체 등 제조(b)	상품김치 (c)	소계 (a+b+c)	상품김치 (d)	합계 (a+b+c+d)	상품김치 (c+d)
계	747	368	486	1,601	306	1,907	752
가정	747	-	283	1,030	37	1,067	320
외·급식 등	-	368	163	531	269	800	432
수출	-	-	30	30	-	30	-
감모	-	-	10	10	-	10	-

* 출처: 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시범), 농림축산식품부·aT(2020년)

* 국산 상품김치의 재고 및 일부 유통과정 상 감모 등으로 총 공급-총 수요 불일치 10천톤 발생 추정

☑ 김치생산 및 판매현황('20년)

지역명	생 산 현 황			매 출 현 황			
	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국 내 판매량	국내판매액	수출량	수출액
소계	4,178,309	84,549	1,199,120,685	421,084	1,319,144,522	36,521	136,554,978
충청북도	908,220	84,549	235,110,378	76,811	244,064,285	7,721	33,348,597

* 2020년 식품 등 생산실적 통계에 따른 것이며, 우리도의 김치생산량, 수출량은 각각 전국 2위임

나. 주요 검토내용

1) 「김치산업 진흥법」의 체계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 김치는 식품의 일종이며, 김치산업은 식품산업의 일부에 속하여 「식품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2011년에 별도로 제정되었으며,
- 「김치산업 진흥법」은 김치산업의 기반조성과 김치산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국가(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과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김치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법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소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실시(제11조), 김치연구소 설립과 운영·관리 지원(제13조),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제14조),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에 대한 지원(제16조),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대한 지원(제17조),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제20조),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에 대한 우선구매(제230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	2016.01.0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5.2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김치산업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2014.01.01
경기도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6.11.08
충청남도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6.10
전라남도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1.07.01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1.01.04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김치”, “김치산업” 등의 용어를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의함
 -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 **안 제3조**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5년마다 계획의 목표와 방향, 김치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김치산업 육성 시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명시함
 - 김치 수출 등 세계화 추진, 김치문화 계승·발전,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유통 지원 등의 사업은 김치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6조**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김치 관련 기관·학교·연구소·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원회는 진흥계획의 수립,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 사항 등을 심의·자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검토 의견

-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김치 재료의 수급 불안정과 김치제조업체의 경쟁력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제조시설 현대화와 유통체계 개선 등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인 김치와 김치산업을 보호·육성함은 물론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김치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우리도는 김치생산액, 수출액, 중견김치 업체수 등이 각각 전국 2위이며, 김치원부자재 및 절임배추 주산지로서 김치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김치산업 경쟁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김치생산 및 판매현황(20년)

(단위: 톤, 천원, 달러)

지역명	생 산 현 황			매 출 현 황			
	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국 내 판매량	국내판매액	수출량	수출액
소계	4,178,309	464,165	1,199,120,685	421,084	1,319,144,522	36,521	136,554,978
서울특별시	25,264	6,705	20,572,193	6,715	26,307,316	-	-
부산광역시	212,441	9,505	25,110,013	9,248	30,002,350	-	-
대구광역시	20,828	3,488	9,874,611	3,502	11,734,581	-	-
인천광역시	58,437	15,865	32,156,821	15,632	39,780,154	122	241,189
광주광역시	38,096	5,324	17,986,978	5,261	23,135,075	12	65,749
대전광역시	17,363	3,804	8,908,683	3,788	9,989,983	-	-
울산광역시	6,016	3,004	3,962,423	3,004	5,003,794	-	-
세종특별자치시	2,399	532	1,444,304	529	1,863,654	-	-
경기도	1,248,872	122,805	279,785,864	121,113	325,687,697	1,336	4,197,433
강원도	500,728	59,023	145,255,597	53,978	208,705,710	890	1,746,566
충청북도	908,220	84,549	235,110,378	76,811	244,064,285	7,721	33,348,597
충청남도	324,714	30,084	65,768,041	29,018	84,416,164	141	505,377
전라북도	347,180	20,052	55,179,546	18,684	60,095,371	1,263	5,057,817
전라남도	162,305	20,875	70,093,152	18,257	74,042,207	2,512	9,589,771
경상북도	106,860	29,517	79,646,897	26,633	77,478,835	3,397	11,153,974
경상남도	144,027	46,367	141,240,754	26,250	88,538,973	19,128	70,648,506
제주특별자치도	54,558	2,666	7,024,431	2,660	8,298,372	-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식품 등 생산실적 통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건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시행계획 등 농어업·농촌 관련계획에 김치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지원 등)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품평회 및 국내외 김치 관련 박람회 참가
2. 법 제17조에 따른 김치 수출 등 세계화 촉진
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 계승·발전
4.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유통 지원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학교·연구소·기업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발췌

□ 김치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며 대표상품을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김치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세계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첨부 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사 유

-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해 수반되는 신규 예산 편성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